

XI. UAE

XI. UAE

1. 라벨링 규정

가. 관련 법 및 규정

- UAE는 각 에미레이트별 독자적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아즈만, 라살카이마, 움알퀘인, 후자이라). 두바이의 경우 관련 규정은 Dubai Municipality(Food Control Department)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아부다비의 경우 Abu Dhabi Municipality(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에서 관리하고 있음
 -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 www.adfca.ae
 - Dubai municipality : www.dm.gov.ae
- UAE 는 인터넷 및 인프라가 미약하여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두바이 정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규정 handbook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두바이 정부는 E-service의 하나로 Food Import Re-Export System(FIRS)를 운영하고 있음. 식료품 수출입, 라벨 허가, Health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바코드, 관련 수수료 징수, 서류 절차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음

2. 라벨링 표시사항

- 기본 라벨링 표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Brand Name
 - ② Product Name(a summarized description of the food product)
 - ③ The food ingredients(arranged according weight or volume)
 - ④ Production & Expiration dates of all products
 - ⑤ Name of the food manufacturer, packer, distributor or importer)
 - ⑥ Net weight or volume

- ⑦ Country of origin
 - ⑧ Products barcode
 - ⑨ Lot(batch) number
 - ⑩ Storage conditions
 - ⑪ Mentioning the ingredients which may cause hypersensitivity
 - ⑫ Language of the label SHALL be in Arabic. Approved stickers could be used to translate the food labels in Arabic Language.
 - ⑬ Instructions for using the products(if needed)
 - ⑭ Displaying the nutritional information is optional.(except the products with special uses such as baby foods, foods for patients, etc)
- 폰트 및 위치는 상관없음
 - 식품 샘플 또는 라벨(또는 복사본)을 Karama에 위치한 Food trade section에 제출하여야 함(라벨에는 전자 등록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모든 음식의 라벨은 Food Control Department에 의해 검토가 되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Note가 됨. 신청서 상태가 Approved Pending Payment로 변경됨
 - 회사는 신청서의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 결제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Food Trade Control Office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함
- 주요사항
- 두바이에 유통되기 이전에 모든 제품의 라벨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위 규정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는 않음.(가공을 하지 않은 야채나 과일 의 경우 1, 2, 6, 7, 10, 12번의 규정만 지키면 됨)
 - 모든 제품은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라벨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출하기 전, UAE 내 식품 연구소를 통하여 성분검사를 진행해야 함
 - 제조 프로세스로 인하여 GCC 기준 #150-2007(Expiration of foodstuffs)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 내용은 라벨 허가 신청서 제출시 명시해야 함
 - 모든 등록은 FIRS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함
 - 라벨에 과장광고나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음(UAE는 소비자 권리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미약함)

- 칼로리 표시에 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니나 점차 당뇨병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비만방지를 위하여 추후에 적용할 예정임.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이거나 내용은 없음.

- 라벨 표시 예시



<기존 영문 표기 → 아랍어 표기로 변경(2008년 3월 변경)>



<치즈볼 제품의 영어/아랍어 표기 라벨>



<네슬레 시리얼의 옆면-아랍어와 영문으로 모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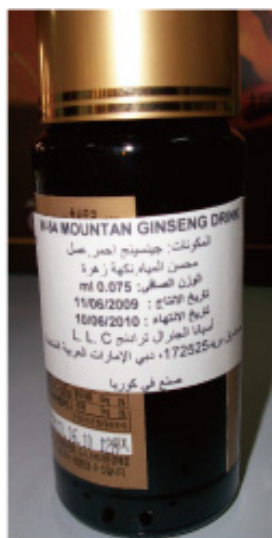
- 성분에 육류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 할랄 증명서가 의무적으로 필요(라면의 경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경우도 할랄증명서를 통하여 제품 공급이 가능하며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가 불가능(이슬람 문화적 특수성), 할랄 증명서가 없는 제품을 판매가 어려움

3. 라벨링 관련 문제사례 (통관후 문제 사례)

- 라벨은 원산지에서 붙여서 UAE로 들여와야 함. 원산지에서 부착하지 않고 UAE에서 붙이는 일이 발생해 통관 지연
- 인삼 드링크 제품의 경우, 유통 중 알코올이 발생하는 것을 담당 무역업자가 알지 못하였으나 통관 후 두바이 정부 실험실 테스트 결과 발견되어 모든 제품이 판매 중단됨(현재 모든 컨테이너에서 제품별 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 하고 있음)
- 기존에는 위와 같은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현지에서 파기하였으나 지금은 원산지로 다시 돌려보내 운송비에 대한 이중부담을 겪고 있음
- 한국 현지 슈퍼를 운영하는 담당자에 따르면 통관에서 검사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아랍인이 없고 대부분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제 2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어 아랍어 라벨링의 경우 잘못 부착이 되더라도 식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현재 UAE 내 롯데 제과와 오리온이 진출하여 있음. 특정 제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0.03%의 알코올처리를 하는데 이로 인하여 UAE 내 수입이 되지 않고 있음

4. 건강식품/특수식품 표기방법

- 건강식품과 특수식품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라벨을 붙여야 함
<건강 식품의 라벨 . 일반 제품과 동일>



5. 자료원 및 관련 사이트

-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 www.adfca.ae
- Dubai municipality : www.dm.gov.ae
- Customs : www.customs.ae